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

[대구지법 2011. 5. 4. 2010구합3833]

【판시사항】

군청 농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토지의 불법성토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한 甲의 민원처리 경위를 시간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 경위를 문의한 경상북도청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해 준 자료에 대하여, 甲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, 위 자료에 대한 군수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

【판결요지】

군청 농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토지의 불법성토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한 甲의 민원처리경위를 시간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 있다가 위 토지의 불법성토 및 민원처리에 관한 경위를 묻는 경상북도청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해 준 자료에 대하여, 甲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, 위 자료는 군청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甲의 민원처리 경위를 기재한 문서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, 경상북도청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자료를 송부하여 준 행위는 내부적인 보고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,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명에 의한 결재를 거친 문서일 것이 요구된다고 볼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, 위 자료는 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군수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.

【참조조문】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, 제9조 제1항,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1항

【전문】

【원 고】

【피고】고령군수

【변론종결】2011. 4. 6.

【주문】

1

- 1. 피고가 2010. 10. 15.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】주문과 같다.

[이유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】1. 처분의 경위

- 가. 원고는 2010. 10. 11. 피고에게, '경북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 429, 431, 422, 423-1, 423-2번지 토지(이하 '이 사건 각토지'라 한다)의 불법성토에 대한 처리내용을 경상북도청(농업정책과)에 보고한 자료(이하 '이 사건 쟁점자료'라 한다)'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.
- 나. 피고는 2010. 10. 15. 원고에 대하여, '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문서는 서명에 의한 결재가 없고, 기록물대장에 등재·관리되지 않았으며, 담당자가 참고자료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이상 공문서라 할 수 없으므로,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(이하 '정보공개법'이라 한다)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로 볼 수 없다'는 이유로 정보비공 개결정을 하고, 이를 통지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

가. 당사자의 주장

- 원고는, 이 사건 쟁점자료는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 경상북도청에 이메일로 발송한 문서이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'정보'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
- 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쟁점자료는 담당공무원이 내부적인 용도를 위해 개인적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에 의한 결재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문서라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

나. 관계 법령

별지 '관계 법령' 기재와 같다.

다.

인정 사실

- (1)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불법성토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, 피고 소속 농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원고의 민원처리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그 문서파일(이 사건 쟁점자료)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두었다.
- (2) 이후 고령경찰서에서 경상북도청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불법성토에 관하여 의견을 조회하였고, 경상북도 소속 담당 공무원이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불법성토 및 원고의 민원처리에 관한 경위를 묻자,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위 문서파일(이 사건 쟁점자료)을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하여 주었다.
- 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3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라. 판단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이 사건 쟁점자료가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, 즉 '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문서(제2조 제1호)'인지 본다.

살피건대, 위 인정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① 이 사건 쟁점자료는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원고의 민원처리 경위를 기재한 문서이므로 이는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, ② 경상북도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자료를 송부하여 준 행위는 내부적인 보고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점, ③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고유의 법리와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,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명에 의한 결재를 거친 문서일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쟁점자료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정보라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[[별 지] 관계 법령 : 생략]

판사 진성철(재판장) 민병국 김광남